

202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1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엠북 자격증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1시간 30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시험 필독서

도서명 : 국가유산관련법령1

ISBN : 979-11-94286-54-7

발간일 : 2024-12-23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hanmail.net

정가 : 18,000원



문화유산관련법령1

[목차]

제1편 총론(p7)

제1장 총칙(p8)

제2장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p12)

제3장 보호의 기반 조성(p16)

제4장 지정 및 관리(p22)

제2편 문화유산법(p54)

제1장 총칙(p55)

제2장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p61)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p67)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p91)

제5장 일반동산문화유산(p102)

제6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p108)

제7장 국외소재문화유산(p110)

제8장 시·도지정문화유산(p115)

제9장 문화유산매매업 등(p115)

제10장 상시적 예방관리(p122)

제11장 보칙(p127)

제12장 벌칙(p135)

제3편 자연유산법(p146)

제1장 총칙(p146)

제2장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p150)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p155)

제4장 보존, 관리 및 활용(p174)

제5장 보칙(p184)

제6장 벌칙(p187~190)

[약어]

- 청장은 국가유산청장
- 유산청은 국가유산청
- 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부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
-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 군, 자치구
-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군구
- 보호물/구역은 보호물, 보호구역
- 보존등은 유산 보존, 관리, 활용
- 소유자등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 지능정보는 문화유산지능정보
- 임시지정유산은 임시지정문화유산

- 업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
-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1. 정의

가. 보호물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한 건물/시설물
-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고시된
건물/시설물

나. 보호구역

1) 문화유산

- 지상 고정 유형물이나 일정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문화유산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

- 지정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비를 위해 지정

2) 자연유산

- 일정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

- 천연기념물등 보호를 위해 지정/고시

다. 역사문화환경

- 문화[자연]유산 주변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

- 문화[자연]유산과 함께 보호 필요

2. 보호의 기본원칙

가) 문화유산은 원형유지

나) 자연유산

- 인위적 간섭 최대한 배제, 자연적 변화 등 고유 특성 반영
-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
-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금지

3. 국가등의 책무

- 가) 국가등은 개발사업시 유산, 보호물/구역, 역사문화환경 훼손 않도록 노력
- 문화유산은 국민, 자연유산은 소유자등은 국가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

나) 문화유산

- 국가는 보존등 종합 시책 수립/추진
- 지자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보존등 시책 수립/추진

다) 자연유산

- 국가등은 보존등 시책 수립/시행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문화유산[자연유산] 보존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 따름

나) 문화유산

-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유산 포함) 수리, 실측, 설계, 감리와 매장유산 보호/조사,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은 따로 법률(국가유산수리법)으로 정함

다) 자연유산

-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법, 매장유산법 따름
- 천연기념물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동식물은 법 적용안함

제2장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 문화유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

- 청장은,

가. 중앙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거쳐

5년마다 수립

나. 수립시 다음 의견 청취

1) 소유자등

2) 전문가

- 문화유산위, 자연유산위 위원

- 문화/자연 유산 전문 지식, 경험 가진

청장이 고시하는 자

다. 수립하면 시도지사에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

라. 필요시 시도지사에 자료 요청

2. 시행계획

가) 청장/시도지사는 기본계획[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수립한 때 공표

- 2월말일까지 유산청 및 시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나)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1월 31일까지 청장에 제출

3. 문화[자연]유산위원회

가) 유산청에 둔다

나) 분과위 둘 수 있다

- 다른 분과위와 합동분과위 열 수 있다

- 분과위/합동분과위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자연]유산위 조사/심의 의제

4. 시도 문화[자연]유산위원회

가. 시도에 둔다

나. 조직/운영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포함

- 보존등 조사/심의
- 위원 위촉/해촉
- 분과위 설치/운영
- 전문위원 위촉/활용

다. 시도지사가 청장에 다음 요청시 위원회